## 대학교 학자금 대부 기준

- 제1조 (목적) 이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직원 및 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대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대부대상자) 대부대상자는 대부기준일 현재 대학(교)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3조(대부 대상학교) ①대부대상 학교는 국내 및 해외 대학(교)로 한다. 다만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 대학 어학연수과정, 전문학교, 비학위 과정은 제외한다. ②대부대상 학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학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.
- 제4조(대부기준) ①대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르되, 만원미만은 절사한다.
  - 1. 국내 대학 : 실제 등록금 납부액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) 범위 내 금액
  - 2. 해외 대학 : 연간 \$10,000 이내 실제 등록금 소요액(원화 환산 지급)
    ②학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.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는 한국장학재단의
    기준에 따른다. (예 : 같은 학기 대학 등록금에 대해 공사에서 학자금 대부를
    받고, 대학에서 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부를 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 지원에 해당)
- **제5조(대부이자)**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부한다.
- 제6조(대부시기) 대부시기는 학기별로 대부하되, 당해 연도의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.

- 제7조(신청서류) 학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대학교 학자금 대부신청서 (별표 1)
  - 2. 대학교 학자금 상환 각서 (별표 2)
  - 3.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
  - 4. 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증명서 1부 (신규 대부자녀에 한함)
- **제8조(대부한도)** 대부횟수는 2년제 대학은 4회, 3년제 대학은 6회, 4년제 대학은 8회, 6년제 대학은 12회까지로 한다.
- 제9조(상환기간) ①상환기간은 자녀가 대학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분할상환기간은 대여학자금 1학기분을 6월로 계산하여 산정한다. ②자녀가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 중퇴 익월부터 2년 경과 후 상환한다.
- 제10조(상환방법) ①대부금 총액을 분할상환기간 해당 개월수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다.
  - ②제1항의 상환액 산정시 1,000원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총액을 최종 상환월에 상환한다.
  - ③상환기간 중 피대부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상환액을 퇴직급에서 우선 공제하여 일시 상환한다.
- 제11조(채권확보) 학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직원은 대부금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피대부 직원자녀 신상변동 신고) 피대부 직원 자녀의 졸업, 휴학, 퇴학, 복학, 편입학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 대학교 학자금 대부 신청서

### 1. 대부신청인 인적사항

소속	직위	성명	
주민등록번호	연락처	퇴직 예정일	
주 소	·		

#### 2. 취학자녀 인적사항

신청인과의 관 계	성 명	성별	학교 및 학과명	학년	신청금액	비고
합 계						

<sup>※</sup> 신청금액 기재시 만원 미만은 절사

### 3. 입금 계좌 등 기재사항

(희망)상환시작일			(희망)보증보험 기간		
예금주		금융기관		계좌번호	

본인은 공사의 대부규정 및 대부업무 처리기준에 규정한 모든 조건을 승인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( )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

소 속:

직 위:

성 명: (인)

# 대학교 학자금 상환 각서

본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에서 대학교 자녀학자금을 대부 받음에 있어 대학교 학자금 대부기준(이하 "기준"이라 함)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.

다 음

o 본인은 공사에서 년 월 일 대여학자금을 대부받음에 있어 기준 제 10조 (상환방법)에 의거 대부 잔액에 대한 분할상환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, 퇴직시 미상환 잔액을 본인에게 지급되는 제 지급금(퇴직금 등)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음.

20 년 월 일

소 속:

주민번호 :

성 명: (인)

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사 장 귀하